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     제2022 - 46 - 172호

안 건 명    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 결 일      2022. 9. 14.

### 주        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가. 금       액 : 3,600,000원
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# 이         유

#### I. 기초 사실

##### 가. 피심인의 일반현황

피심인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위치정보법'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이고,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.

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허가 번호	사업자	대표자	사업 내용

## II. 실태점검 결과

### 1. 점검 배경

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운영 여부 점검('20.10월 ~ '21.12월)을 진행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피심인의 행위사실

피심인은 '15년 11월 2일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아 '15년 11월 2일에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개시하였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'18년 4월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.

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방송통신위원회는 '22년 5월 18일에 '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2년 5월 24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III. 위법성 판단

### 1. 관련 법 규정

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휴·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휴·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, 피심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다 휴·폐업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.

## IV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 1. 기준 금액

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 과태료 부과 기준 >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라.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	법 제43조 제1항제3호	600	1,200	2,000

### 2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는 위반행위의 동기 · 내용 · 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은 실태점검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

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기준금액의 40%를 감경한다.

### 3. 최종 부과금액

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8조를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3,600,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V. 결론

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2년 9월 14일

위 원 장	한 상 혁	(인)
부위원장	안 형 환	(인)
위 원	김 현	(인)
위 원	김 효 재	(인)
위 원	김 창 통	(인)